

예 산 총 칙

제1조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
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724,000,568	24,113,979
일반회계	589,451,767	17,683,516
특별회계	134,548,801	6,430,461
기타특별회계	23,104,268	693,126
· 주택사업특별회계	773,020	23,190
· 교통사업특별회계	17,997,626	539,928
·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3,997,496	119,924
· 기반시설특별회계	336,126	10,084
공기업특별회계	111,444,533	5,737,335
· 상수도사업특별회계	25,900,999	777,029
· 하수도사업특별회계	65,343,534	1,960,306
·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	20,200,000	3,000,000

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없음”

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231,988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
2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
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